

## 기획·연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예원예술대학교(이하 “본교”)의 종합발전 및 연구업적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획·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기획조정처장이 된다.<개정 2017.09.25>
2.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연구하고 기획 조정한다.

1. 연구지원(학술연구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2. 연구제목, 연구자의 선정, 연구비의 배정과 지급 등에 관한 사항
3. 대학요람, 논문집, 학술보고서 등의 편집과 발간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술연구 지원<개정 2015.1.13>
5. 대학 부설연구소 설립에 관한 사항
6. 대학 종합발전계획 수립(학제, 학사행정, 시설) 등에 관한 사항
7. 대학운영(기구조직·인력수급·업무개선)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지원사업 등의 계획·수립 신청 등에 관한사항
9. 기타 대학발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기타 총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5조(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 위원회의 사무는 기획조정처에서 관장하며,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3><개정 2017.09.25>

**제7조(간사)** 이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조정팀장이 된다.

**제8조(재정)** 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비, 조사비, 여비,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 위원은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대해서는 책임 중은 물론 퇴임 후에도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01. 1.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10. 6)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9.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2. 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21)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 13)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5. 10)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 25)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